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확보 위해 공무원법 위반
혐의 교육장들 직위해제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134호
2. 발 의 자 : 이종배 의원
3. 발의일자 : 2024년 9월 6일
4. 회부일자 : 2024년 9월 6일

II. 주문

- 특정사안에 대하여 공직자 이름으로 집단성명을 발표하여,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또한 교육감 선거에서 중립성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심히 우려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장들을 교육장직에서 배제하여, 징계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고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교육감 권한대행에게 이들에 대한 직위해제를 촉구함.

III. 제안이유

- 조희연 당시 서울시교육감에 대하여 대법원은 지난 8월 29일 직권

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에 대해 최종 판단을 하였음.

- 대법원 선고 직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육장 10명 등 150여 명의 교육전문직, 학교관리자들이 “교육감 해직말라” 는 집단성명을 직위와 성명을 밝히며 발표하였음. 그러나 이런 행위는 허가받지 않은 집단행동을 금지한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위반 소지가 농후함.
- 특히 교육장들은 소속 공무원들이 법령상 의무를 다하도록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고위 공직자로서 심히 부적절한 처사임.
- 이들의 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를 원활히 하고, 오는 10월 16일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는 고위 공직자의 직무 배제가 절실히 요구됨.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2. 이송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심혁보)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결의안은 2024년 9월 6일 이종배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134호로 발의되어 2024년 9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결의안은 조희연 당시 서울시교육감의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교육장 10명 등 서울시교육청 소속 일부 공무원이 성명을 발표한 것이 「지방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농후한바, 보궐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육감 권한 대행에게 성명에 참여한 교육장의 직무 배제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결의안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

- 결의안을 비롯한 지방의회의 의견표명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지방의원의 의무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44조제1항에¹⁾ 따라 그 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지는 행위입니다.²⁾
- 따라서 지방의회의 결의안은 관계기관에 법적 구속력이 없음은 물론 의원 전체의 공식적인 의견을 대내외적으로 표출하는 것에 불과한바, 그 내용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가 아닌 사회 현안이나 의제에 관해서도 광범위하게 다룰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1)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행정안전부(2022.6.),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 122쪽.

- 실제로 서울시의회에서조차 결의안은 특별위원회 구성과 같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부터 법령 개정의 촉구,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북한 배경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등 우리 사회의 여러 현안에 대하여 시의회 차원의 의사를 표시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이에 본 결의안은 조희연 당시 서울시교육감의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일부 공직자가 소속 기관장의 양형에 관한 성명을 발표한 것이 부적절한 법률 위반 행위임을 밝히고, 해당 성명에 참여한 교육장의 직위해제를 통해 직무에서 배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특히, 동 결의안은 제안 이유에서 서명에 참여한 교육장들에게 직위 해제를 촉구하는 사유가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공적 가치 보호에 결의안의 목적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 결의안의 제안 취지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1항이 규정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결의안이 담고 있는 주요 주장 역시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행정안전부(2022)는 결의안을 비롯한 지방의회의 의견표명권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단체장의 고유권한 행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의견표명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³⁾
- 이와 같은 관점에서 결의안이 주장하는 교육장 10명의 직위해제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6호에⁴⁾ 따른 교육감의 관장사무이고, 결의안의 내용이 특정인의 인사 조처를 요구

3) 행정안전부(2022.6.),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 122쪽.

하고 있는 만큼 지방의회의 의견표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동 안건 발의의 적정성은 결의안이 수호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과 결의안 가결로 인한 서울시교육감의 고유 권한 침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나. 세부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결의안은 조희연 당시 서울시교육감의 대법원판결 직전 발표된 교육장 등의 집단성명 발표가 「지방공무원법」 위반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가능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 2024년 8월 29일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당시 서울시교육감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이에 따라 조희연 당시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9조와⁵⁾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는 교육감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에⁶⁾ 따라

지방의회의 권한 중 의견표명권은 법상의 권한이 아니고 학문상, 통념상 개념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1항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 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의 의원 의무규정의 이행과 주민의 의견을 지방의회가 대변하여 표명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지방의회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권고’에 해당될 것이며, 이 결의안의 접수기관에서는 결의안에 대하여 기속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판에 관여하는 일이나, 단체장의 고유권한 행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및 소수의 이익을 위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행사해서는 안 될 것이다

-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5)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교육감의 퇴직)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교육감직을 상실하였습니다.

- 해당 재판은 2018년 조희연 교육감과 그 비서실장이 공모하여 합격자를 내정하고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의 공개채용 원칙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유무죄를 다투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공소제기 요청과 검찰의 불구속 기소를 거쳐 1심과 2심이 진행되었으나 하급심 모두 조 전 교육감의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상황에서 조희연 전 교육감 측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졌습니다.

[표-1]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특별채용 관련 사안 진행 경과⁷⁾

일 자	내 용
2018.8.9.	특별채용 추진(안) 교육감 결재
2018.8.24., 10.1.	1차, 2차 법률 자문
2018.11.30.	특별채용 공고
2018.12.11. ~ 12.17.	1차, 2차 전형 * 평가위원: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
2018.12.20.	인원 확정 * 응시자 17명 중 5명 채용 확정
2018.12.31.	특별채용 임용 알림
2020.5.7. ~ 2021.4.23.	감사원 실지감사 진행(특별조사국 제5과) ※ 업무담당자 및 심사위원 등에 대한 소환, 교육감 질문서 발부 등 진행
2021.4.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입건(사건번호 '2021년 공제1호')
2021.5.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 이첩 (서울경찰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5. ~ 2021.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진행 ※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교육감 출석 조사 등
2021.9.3	공소제기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검찰)
2021.12.24	서울중앙지검, 조희연 교육감 불구속 기소
2023.1.27	서울중앙지방법원, 조희연 교육감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23.1.27	서울중앙고등법원, 조희연 교육감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24.8.29.	대법원, 조희연 교육감 상고 기각 (원심 판결 확정)

7)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2023.3.6.),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종합감사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경과를 추가하여 정리한 것임.

○ 한편, 결의안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명은 해당 재판의 상고심 선고를 앞둔 2024년 8월 27일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희망하는 전국 140인 학교관리자·교육전문직 일동’의 명의로 발표된 것으로,⁸⁾ “특별채용된 교사는 교원의 정치 기본권이 극도로 제한된 현실로 인해 해직되었고, 조희연 교육감의 특별채용은 이들을 구제하고 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행위” 였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⁹⁾

○ 이와 관련하여 동 결의안은 교육장이 성명에 참여한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이 규정하는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교육감 궐위로 발생할 수 있는 보궐선거에 대비한 지지 결집 행위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의안은 성명에 참여한 교육장이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의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특별한 책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집단행위에 참여했다는 측면에서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에게 직위해제를 위한 조속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 논의되는 ‘집단행위 금지’ 원칙은 「지방공무원법」¹⁰⁾ 제58조제1항에¹¹⁾ 규정된 것으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이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8) 윤근혁 기자(2024.8.27.), “교육장·교장 등 157명 “해직교사 구제 서울교육감 해직 말라”“, <교육언론 창>,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56> (검색일 2024-09-07)

9) 성명서는 발표 당시에 서울시교육청 소속 9명의 현직 교육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에서 근무하는 학교장과 교감, 장학관과 장학사 등 140명이 이름을 올렸으나 이후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이 증가해 총 157명이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음. (자료 : 윤근혁 기자(2024.9.6.), 강은희 임태희도 ‘조희연 탄원’... “탄원교육장 해임하라”는 국힘, <교육언론 창>,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53> (검색일 2024-09-07))

10)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교육행정기관(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원 등은 모두 교육공무원임. 그러나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은 시도교육감 소속이긴 하지만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교육전문직원의 경우 지방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음.

11) 「지방공무원법」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통해 ‘집단행위’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 정의하고,¹²⁾ 대법원은 다른 판례에서 집단행위 금지 조항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을 공무원 등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것과 같이 공직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쳐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¹³⁾

또한, 대법원은 2017년 판례에서 다수의 공무원이 단체를 결성하여 그 단체의 명의로 의사를 표시하거나 발표문에 서명·날인하는 등의 수단으로 여럿이 가담한 것을 표현하는 행위 역시 집단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¹⁴⁾

- 따라서 교육장 등의 성명서 발표는 재판부를 상대로 소속 기관장 양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 구체적인 근거 없이 대외적으로 소속 기관장 양형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 직무수행에 있어 고도의 중립성이¹⁵⁾ 요구되는 교육공무원이 사안에 대한 특정 입장을 기명으로 발표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현행 법률이 제한하는 공무원의 집단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더욱이 성명에 참여한 교육장들은 당시 조희연 교육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어 해당 행위가 시민들에게 소속 기관장에 대한 옹호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었고, 교육감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공직자가 극도의 공정성이 요구되는 인사 채용 과정의 직권남용 행위를 정면으로 옹호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공개적으로 성명에 참여하였습니다.

12)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1헌바50 전원재판부 [구지방공무원법제58조제1항등위헌소원]

13)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4)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정직처분등취소]

15)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행위는 궁극적으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을 저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집단행위 금지 원칙 위반과 별개로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¹⁶⁾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¹⁷⁾ 사료됩니다.

- 따라서 동 결의안이 성명에 참여한 교육장의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고, 이들의 징계 절차를 전제로 하여 직무 배제를 요구하는 것은 사안의 내용과 법률 위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타당한 주장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집단행위 금지 원칙은 공무원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그 저촉 여부 판단에 상당히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으며, 집단행위의 요건 중 하나인 “공익에 반하는 목적”에 성명 내용이 부합하는지나 해당 행위가 “직무전념 의무의 해태”에 이른 것인지에 관한 부분 역시 다양한 차원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음을 참작해야 합니다.
- 이러한 맥락에서 대법원은 공무원의 집단적 의사표시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또는 교원이라는 지위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행위의 동기와 목적, 시기와 경위, 당시 정치·사회적 배경, 행위 내용과 방식, 특정 정치세력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¹⁸⁾
- 더욱이 결의안이 성명 발표를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지지 결집 행위”로 규정하거나 “해당 교육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16)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대법원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하기에 손색이 맞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함. 따라서 상술한 바와 같이 성명에 참여한 교육장이 자신의 행위가 상급심 결과에 따라 소속 기관장의 불법행위를 옹호하고, 채용 과정 중 발생한 직권남용 행위를 부정하는 의사표시가 되어 교육행정의 대민 신뢰성을 저하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성명에 참여했다면 품위유지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 가능함. (관련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정직처분취소] 참고)

18)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없다” 고 언급한 부분은 성명 내용이 당시 교육감의 유무죄 여부가 아닌 교육감의 지위를 내려놓지 않는 수준의 양형을 주장하는 데 그치고 있음에 비추어볼 때,

성명 참여자가 보궐선거나 정치적 이해관계 등을 염두에 두고 성명을 발표했다는 정황이나 근거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이상 논리적인 완결성이나 설득력은 다소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종합의견

- 동 결의안은 조희연 당시 교육감의 상고심 판결에 관한 일부 교육장 등의 기명 성명서 발표가 「지방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함과 동시에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공무원의 직위해제를 통해 보궐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발의되었습니다.

- 이는 결의안의 법적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44조제1항이 규정하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성명 내용과 기명 발표라는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지방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조항의 위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부인할 수 없으며,

교육장이 소속과 성명을 기명하여 성명서에 참여하고 이를 대법원 확정판결 전 언론을 통해 밝힘으로써 교육행정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민의 신뢰 저하의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동 결의안의 내용과 주장은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결의안이 단체장의 고유권한 행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이 있고, 집단행위 금지의 원칙은 공무원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저촉 여부 판단에 신중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안전을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이상으로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확보 위해 공무원법 위반 혐의 교육장들 직위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2180-8263)	입법조사관	김지수(2180-8264)
----------	----------------	-------	----------------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 제44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4. 3. 19.] [법률 제20377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 ②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
-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조합업무를 전임(專任)으로 하려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 지방의회의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43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教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제24조의3(교육감의 퇴직)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교육감이 제23조제1항의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지거나 합쳐진 경우 외의 다른 사유로 교육감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함으로써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를 포함한다)
3. 정당의 당원이 된 때
4. 제3조에서 준용하는 「지방자치법」 제110조에 따라 교육감의 직을 상실할 때

공직선거법

[시행 2024. 3. 8.] [법률 제20370호, 2024. 3. 8., 일부개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選舉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교육기본법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51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